

부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류7호선)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7월 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7월 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◦제105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03년7월11일) 상정,
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계획팀장 장이선)

제안이유

○관내 경인로(대류1류1호선)와 복숭아로(중로3류4호선)를 연결하는 깊은구지로(중로2류7호선)는 통행량에 비해 도로폭원(15m)이 협소하며, 경인로·신흥로·깊은구지로 교차로의 기하구조 불균형, 도로변 불법 주·정차, 유·출입차량 집중등으로 인해 경인로로의 진·출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

○현행 중로2류급(15m) 도로에서 대로1류급(35m) 도로로 변경하여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 및 도로폭 확폭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로2류7호선)을 변경하고자 금회 도시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.

주요내용

○ 경인로(대로1류1호선) ~ 복숭아로(중로3류4호선)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로2류7호선)은 현재 15m 도로로서 통행량에 비해 도로폭원이 협소하며, 경인로·신흥로·깊은구지로 교차로의 기하구조 불균형, 도로변 불법 주·정차, 이면도로에서의 유·출입차량 집중 등으로 인해 경인로로의 진·출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민월해소 및 차량통행을 원활할 도모하고자 함.

관련근거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제3호가목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현재의 도로폭원이 15미터로 협소하므로 20미터나 증가시켜 35미터로 확장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것인가? ◦정확한 위치는? ◦확장계획 구간 종점부(깊은구지)에 접속되는 곳에서는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별 사업효과가 없다고 보는데? ◦소요예산 경비는? ◦도로폭원이 15미터면 그다지 협소하다고 생각되지 않음. 깊은구지로 보다 더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지역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? ◦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됨. 현재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사업의 재원조달에도 시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면서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는 사업도 아닌 확장사업에 막대한 예산투자는 사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예 ◦소사구 심곡동의 깊은구지로임. (도면으로 설명) ◦접속구간에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확장구간내 포켓 차선등을 넣어 정체를 최소화 할 계획임. ◦용지보상비등을 포함해서 354억원 정도 추정함. ◦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에다 이면 도로에서의 유·출입차량 집중으로 경인로로의 진출입이 매우 어렵고 또한 민원제기가 계속 있어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. ◦민원해소와 차량통행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반대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- 없 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.

부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류7호선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서

의안번호	제152호	안 건 명	부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류7호선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결연월일	제105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본회의(2003. 7. 15)

부천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로2류7호선)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

차량통행에 비하여 도로의 폭원이 협소하므로 교통용량 증대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도로 폭원을 확장(15m → 30m)한다고는 하나, 현재의 도로 폭원이 15미터로 교통체증이 그 다지 심각하다고 볼 수 없으며, 현재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확정 등과 기 공사가 착공된 건설사업의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 우선 순위상 곤란하며, 도로 폭원 확장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반대함.

2003년 7월 15일

부 천 시 의 회 의 장

부천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류7호선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

의안번호	제152호
의결년월일	2003.7.15 (제105회)

제출연월일 : 2003. 7. 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사유

- 관내 경인로(대로1류1호선)와 복숭아로(중로3류4호선)를 연결하는 깊은구지로(중로2류7호선)는 통행량에 비해 도로폭원(15m)이 협소하며, 경인로·신흥로·깊은구지로 교차로의 기하구조 불균형, 도로변 불법주·정차, 유·출입차량 집중 등으로 인해 경인로로의 진·출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
- 현행 중로2류급(15m) 도로에서 대로1류급(35m) 도로로 변경하여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 및 도로폭 확폭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로2류7호선)을 변경하고자 금회 도시계획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경인로(대로1류1호선) ~ 복숭아로(중로3류4호선)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로2류7호선)은 현재 15m 도로로서 통행량에 비해 도로폭원이 협소하며, 경인로·신흥로·깊은구지로 교차로의 기하구조 불균형, 도로변 불법주·정차, 이면도로에서의 유·출입차량 집중 등으로 인해 경인로로의 진·출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민원해소 및 차량통행을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

부천시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로2류7호선)변경결정안

□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로2류7호선)변경결정조서안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7	15.0	집산 도로	549.0	대로1-1 (경인로)	중로3-4 (복숭아로)	일반 도로		'83.03.10	경기도 고시68
변경	대로	1	5	35.0	주간선 도로	533.0	대로1-1 (경인로)	중로3-4 (복숭아로)	일반 도로			측량오류 에 따른 연장수정

□ 변경결정 사유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중로 2류7호선	대로 1류5호선	위 치 : 소사구 심곡동 (깊은구지로) 사업규모 - 연 장 : 기 정(549.0m) 변경후(533.0m, 감16.0m) - 도로폭 : 기 정(15.0m) 변경후(35.0m, 증20.0m)	- 중로2류7호선(깊은구지로)은 통행량에 비해 도로폭원이 협소하며, 경인로·신흥로·깊은구지로 교차로의 기하구조 불균형, 도로변 불법 주·정차, 이면도로에서의 유·출입차량 집중 등으로 인해 경인로로의 진·출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 - 도로를 확장하여 민원해소 및 차량통행을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참고사항

- 도시계획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: 일반상업지역, 일반주거지역(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입안중), 미관지구
- 사업시행시기 : 2004. 01. ~ 2008. 12.
- 사업시행자 : 부천시장(도로과)
- 도로(중로2류7호선) 편입토지 현황

- 소유자별 편입토지 현황

구분	계	시유지	사유지	기타	비고
면적(m ²)	19,282	8,801	10,481		
필지수	74	6	68		
구성비(%)	100.0	45.6	54.4		

- 지목별 편입토지 현황

구분	계	대지	도로	전	답	비고
면적(m ²)	19,282	10,551	8,731			
필지수	74	64	10			
구성비(%)	100.0	54.7	45.3			

○ 추정 소요사업비

구분	총사업비	용지보상비	건물보상비	영업권보상비	폐기물처리비	공사비
금액(백만원)	35,461	23,262	5,776	2,840	1,208	2,375

○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(안)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·시설 부문	사업명	우선 순위	사업 기간	사업개요	총사업비	계획기간중 사업비(2004-2008)						비고
						총계	국비 (10%)	지방비			지방채 (10%)	
								계	도비 (10%)	시군비 (70%)		
계			5년		35461	35461	3546.1	28368.8	3546.1	24822.7	3546.1	보상비100% 공사비100%
1단계	깊은구지로 도로확장공사	1	2년	TSM도입	23031.2	23031.2	2303.12	18424.96	2303.12	16121.84	2303.12	보상비 70% 공사비 20%
2단계	깊은구지로 도로확장공사	2	2년	180m 35m확폭	10638.3	10638.3	1063.83	8510.64	1063.83	7446.81	1063.83	보상비 30% 공사비 30%
3단계	깊은구지로 도로확장공사	3	1년	533M전구간 35m확폭	1791.5	1791.5	179.15	1433.2	179.15	1254.05	179.15	보상비 0% 공사비 50%

○ 도시계획 변경결정권자

- 도로(노폭 25m이상) : 경기도지사(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)

□ 기대효과

○ 남북간선도로의 기능 확충으로 교통체증 감소 및 교통환경 개선

○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

□ 위치도

